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의무화〉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7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¹⁾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u>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u>)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② ----- ----- ----- ----- ----- <u>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안전띠</u> ----- ----- ----- -----

1)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3조제23호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9인승에서 15인승 등 2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44인승의 중형버스, 45인승 이상의 대형버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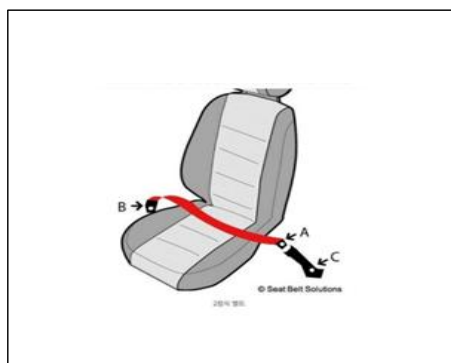
[illegible]

③ ~ ⑦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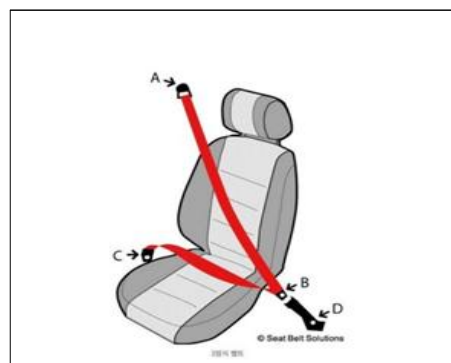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3조제2항).

좌석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주요 부품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2점식과 3점식이 사용되고 있음.

< 안전띠 형태: 2점식, 3점식 >



< 2점식 좌석 안전띠 >



<3점식 좌석 안전띠>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²⁾되어 높이 조절이 불가능한 일반적인 3점식 좌석안전띠³⁾는 사용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통학버스에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데, 2점식 좌석안전띠는 어깨벨트가 없어 충돌 사고 시 상반신을 구속하지 못해 심각한 머리·안면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좌석 규격: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 ②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 ⑤ 생략
- 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3) 일반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의 어깨끈이 목 부분에 걸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음.
- 4)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실태조사>, 2020.8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라 2008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소형 스쿨버스(10,000파운드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형 스쿨버스에 의무화되어 있는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를 대형 스쿨버스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⁵⁾

< 3점식 안전벨트 한계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 >



보호장치 없이 어린이 착용 시



어린이용 안전벨트(미국 스쿨버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실태조사>, 2020.

다만, 법체계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구조·장치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하여 자동차 종류에 따라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 종류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실태조사>, 2020.8, p9~10.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좌석안전띠의 종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⁷⁾

문 의 처
02)6788-5344

-
- 6)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 2,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2억 7,200만원(연평균 4억 5,4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 7)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차량 종류와 특성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좌석안전띠의 종류와 구조는 현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참고자료]

□ 인승별 어린이 통학버스 종류('24. 12월 기준)

계	9인승 미만	9~13인승	14~24인승	25~44인승	44인승 이상
86,080	46	35,915	35,866	11,223	3,030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현황('24. 10월 기준)

총 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37,092	19,250	46,315	13,189	1,758	20,058	408	2,715	609	
142,171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놀봄센터
	132	11	3	23	14	32	34	245	266	17

□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현황

('24. 10월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10월
발생(건)	12	10	21	23	16
사망(명)	0	0	1	0	0
부상(명)	20	18	44	64	38